

손실보상업무의 위임·위탁수수료 요율(제36조제3항 관련)

손실보상금액	수수료 요율기준 (손실보상금액에 대한 비율)
1. 10억원 이하	20/1,000 이내
2.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7/1,000 이내
3.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5/1,000 이내
4.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	13/1,000 이내
5. 100억원 초과	10/1,000 이내

비고

1. "손실보상금액"이란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
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손실보상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
3. 위임·위탁 수수료 요율은 위탁업무의 내용, 위탁사업의 성격 또는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수수료 요율 기준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위임·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